

서울장학재단 징 계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 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라. 음주운전 마.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별표 2의 2와 같음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
	마.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마.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바.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미성년자 성폭력	○						
(2) 그 밖의 성폭력		○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행위			○				
사. 폭력, 가혹행위					○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자. 기타 품위손상						○	
3. 직무유기 등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가. 직무유기태만					○		
	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4.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중요한 비밀의 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 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 누설유출						○	
	5.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			
	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침해					○		
	6.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		
	다.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7.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개정 2015.9.22.> <개정 2015.11.27.>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보복 금지의무 위반행위		○					<개정 2017.2.28.>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카. 채용관련 비위행위							<신설 2017.2.28.> <개정 2019.7.23>

별표 2의 1과 같음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1) 1회 적발 시 (2) 2회 적발 시 (3) 3회 적발 시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	○	<개정 2017.2.28> <개정 2016.10.5> 중대한 부당행위 확인 시 1 회 적발에도 바로 해임 징계
5. 소송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6. 세무행정	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		

※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채용비위자 징계양정기준

□ 채용

비위유형	구 분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¹⁾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²⁾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³⁾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비위유형	구 분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⁴⁾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인사규정 제47조(징계의 종류)에서 정하지 않은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 경과자 주의 등 처분 관리 방침」에 의한다.

□ 정규직 전환

비위유형	구 분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⁵⁾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 ⁶⁾ 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별표 2의 2] <신설 2019.10.2.>

-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 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 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차라기준)	징계기준	비 고
퀵 킷 캄켄첵캄캄 땃 경우	땃켄첵퀵츄 찢땃 0.08% 쥘땃캄 경우	경.중징 계	감봉~견책	1. 캄켄첵캄캄땃 「도로교통법」 제44조제1땃캄 찢땃땃츄 운 캄땃 쥘캄 말한다. 2. 캄켄첵캄캄땃 「도로교통법」제 44조제2땃캄 찢땃땃츄 음주 콀캄츄 캄땃켄 첵캄 찢땃땃 포함한다. 3. "중상해"땃 썩 쥘땃 썩츄 장 츄츄 썩땃 썩땃땃 손상, 사지 캄땃 썩 썩땃 썩츄츄캄 각 상 실·중대변형, 썩땃땃땃 각 영 중츄츄 썩 츄츄 썩땃츄캄 희 썩땃 츄츄썩츄츄 각 부상·질 책 쥘땃 캄츄 츄캄땃땃 부상 썩꺄책캄 말한다. 4. "첵캄츄츄 썩츄 직인"캄땃 운 캄츄 썩 첵캄캄 썩츄 츄츄츄 땃땃 썩츄캄 말한다. 썩땃 운 캄츄츄 썩츄 썩츄캄 음주운전 캄 땃츄땃땃땃 운전면허취소 썩 첵캄츄츄캄켄 땃츄캄 썩켄 첵캄 찢땃츄츄 혈중알코올농 땃츄 썩땃 땃츄캄 썩땃츄 한 다.
	땃켄첵퀵츄 찢땃 0.08% 캄땃캄 찢땃 쥘땃 캄켄콀캄츄 운하 켄 첵캄 경우		정직~감봉	
캄켄첵캄캄땃 첵캄츄츄츄 캄켄땃땃츄 취소 땃 츄츄츄츄 첵캄캄 땃 경우	정직~감봉			
캄켄첵캄캄땃 찢땃땃 쥘땃 썩츄 땃땃츄 있 땃 썩츄츄츄 썩 캄꺄 경우	정직~감봉			
2땃 캄켄첵캄캄 땃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땃 캄땃 캄켄첵캄캄 땃 경우		파면~해임		
캄켄첵캄캄땃 캄츄츄츄츄 땃땃츄 캄땃 교 츄츄츄 썩 캄꺄 땃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땃츄 썩땃 캄츄츄 땃켄 첵캄 경우		파면~정직		
캄켄첵캄캄땃 츄땃츄츄 썩 캄꺄 경우		해임~강등		
캄켄첵캄캄땃 첵캄츄츄츄 캄켄땃땃츄 취소 땃 츄츄츄츄 캄켄첵캄캄 땃 경우		해임~정직		
캄켄첵캄캄땃 썩땃땃 각 캄츄 땃땃츄 캄땃 츄츄츄 썩 썩 캄꺄 경우		해임~정직		
첵캄츄츄 썩츄 직 친꺄 캄켄첵캄캄 땃 경우		파면~해임		
첵캄츄츄 캄꺄땃츄 썩캄 경우		강등~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 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